

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



제주투자 진흥지구 인센티브 제도안내

2019. 11. 1

제주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제도안내

제주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제도는

제주의 지리적 여건과 사업구조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육성 및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내·외국인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자유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세제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.

지정기준 및 요건

개별형 :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(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)

- **대상업종** : 27개 업종
 - 관광호텔업·수상관광호텔업·한국전통호텔업(카지노업*, 보세판매장* 제외), 종합·전문휴양업(골프장, 휴양콘도미니엄업* 제외), 관광유람선업, 관광공연장업, 국제회의시설업, 종합유원시설업, 관광식당업
 - 문화산업, 노인복지시설업, 청소년수련시설업, 궤도사업, 전기생산업, 교육원(연수원)
 - 자율학교, 국제고등학교, 외국교육기관, 국제학교
 - (외국)의료기관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 제외)
 - 첨단기술활용산업,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·연구개발서비스업, 식료품·음료제조업, 마리나산업*, 화장품제조업*, 연구개발업*
 - *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개정 이후 적용(2020년 6월)
- **사전이행사항**
 - 대상사업의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따라 인가·허가·승인·신고 등의 사실이 있을 것
 - 다만, 도지사가 해당 법령에 따른 시설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인가·허가·승인·신고 등이 가능한 경우에도 지정가능
 - ※ 도지사 외 기관의 경우 사전 지정 불가
- **신청기한** : 공사 착수일부터 6개월 이내
- **대 상 자** : 새로이 투자하는 내·외국인
- **총 투자액**(신청일 기준 환율)
 - 관광관련 사업 : 미화 2,000만불 이상
 - 그 밖의 사업 : 미화 500만불 이상
 - ※ 투자사업비 항목 : 토지매입비, 공사비, 측량·조사비, 설계비, 장비구입비 등

단지형 :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(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)

- **대상지역** :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는 지역
- **대상업종** : 개별형과 동일
- **개발사업시행자** :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, 개발센터, 개발센터 출자법인
- **토지소유** :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지역 토지 3분의 2이상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
- **총 투자액** : 1천억원 이상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)

인센티브 제공

조세감면 - 2021년 12월 31일까지(일몰제 적용)

구 분	감 면	감면근거
법인세·소득세	- 입주기업 : 3년간 면제, 다음 2년간 50% 감면 - 개발사업시행자 : 3년간 50%감면, 다음 2년간 25% 감면	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
관 세	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수입하는 자본재	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

※ 입주기업?

- 개별형(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) 지역의 투자기업
- 단지형(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)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(임대) 입주한 투자기업

※ 소득세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?

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(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

구 분	감 면	감면근거
취득세	면제(기산일로부터 5년 이내 한함) (토지 취득 시 사전감면 신청하여야 합니다)	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24조의2
재산세	기산일로부터 10년간 면제	

※ 취득세는 200만원, 재산세는 50만원 초과 시에는 85%만 감면됩니다.

※ 기산일 : 개별형-지정일, 단지형-최초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중 빠른것

각종 부담금 감면

구 분	감 면	감 면 근 거
개발부담금	면제	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별표1 제4호라목)
농지보전부담금	50%	농지법 시행령 제52조(별표2 제3호보목)
대체초지조성비	50%	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(별표2 제6호가목)
대체산림자원조성비	50%	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(별표5 제2호하목)
공유수면 점·사용료	면제	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
하수도원인자부담금	2014년까지 50% 2015년 25% 2016년 이후 15%	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제57조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세부감면기준 고시 제3조

국·공유재산 임대

- **근거법령** :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
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제7항 및 제8항
- **임대기간** : 50년 범위 내 임대(갱신 가능) 및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
- **감면대상 및 기준** :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75% 범위 내 감면, 매각 시 20년 분할 납부
 - ※ 국·공유재산의 임대는 투자사업 인가·허가·승인·신고 시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된 후,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사후에 임대기간, 임대료 감면 등이 적용됩니다.